

제136차 정기이사회 회 의 록

2018. 02. 26(월)



제136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 |
|---|
| ☐ 일 시 : 2018. 02. 26.(월) 15 : 00
☐ 장 소 : 청주의료원 자혜학당
☐ 참 석 자 : 이사 8명, 감사 1명
(손병관, 김낙주, 이철수, 정규호, 이순걸, 조규숙, 이상수, 김동구, 장상교)
☐ 안 건 : 총 11건 |
| 1. 2018 - 01호 2017 회계연도 결산(안)
2. 2018 - 02호 진료비 장기미수금 결손처분 심의·의결(안)
3. 2018 - 03호 2018년도 임대차 심의·의결(안)
4. 2018 - 04호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2018 - 05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 2018 - 06호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7. 2018 - 07호 청주의료원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8. 2018 - 08호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9. 2018 - 09호 실적수당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10. 2018 - 10호 환자급식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 2018 - 11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의 장 :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청주의료원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고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그간 추진되어 온 주요 경영성과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을 준공하여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 하였습니다. 현재 심장센터에는 16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신 장센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시술은 상당히 여러건 하였으며, 스텐트시술만 열건이 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다른 병원 에 비해서 속도가 늦지 않다는 그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급진료 및 관련 타과의 의 협진체계 구축으로 진료영역 확대는 물론 병원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운영으로 84병상에서 126병상으로 늘려서 입원진료서비스가 향상되었고, 감염관리 강화로 보건복지부 선정 감염관리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 진료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건복지부 선정 응급의료기관평가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강화로 보건복지부 선정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5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의료원중 청주의료원이 유일합니다.

2017년 회계결산 결과 143백만원의 흑자를 실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2건 2,290백만원을 조기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재정건전성을 조금이나마 향상시켰으나, 정부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불균형수가정책 및 의료비용 증가로 의료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의료외 부문에서 손실을 보전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공인회계사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부정책 수행으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였고, 연중 Four One Operation이라는 자체적인캠페인활동(한루에 한가지씩 환자나 직원에게 감동을 주는일을 하자, 직원 한사람이 한달에 한명씩 초초진환자를 유치하자등)을 전개하여 외래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조성, 지역주민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수행,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체계 확립, 병원경영효율성 향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이사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의 장 : 그러면 지금부터 재적 이사 12명중 8명이 참석하시어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정관 제21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차 정기이사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오늘 심의·의결해 주실 안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청주의료원 2017 회계연도 결산(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금일 제136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으로 회의서류 제1페이지 상정번호 제2018-01호 2017 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병원 회계감사를 하였던 한빛회계법인 정석화대표이사께서 직접 결산 감사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화 공인회계사 2017 회계연도 결산(안) 제안 설명]

○ 의 장 : 2017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장 :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 정규호이사 : 외형적으로 143백만원의 흑자달성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결산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도비 감가상각 24억으로 인해 2년 동안 흑자기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고 작년도에 비해 흑자가 약1억이상 줄어들었으며, 6백억 정도의 살림규모에서 1억원의 흑자는 상당히 위협스러운 상황입니다. 갈수록 수입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고, 그런 기초하에서 경영을 해야 담보상태에서 벗어나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을 중심으로 모든직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개선책을

○ 의 마련해서 다음 이사회때에는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 고맙습니다. 이사님 말씀대로 그런 기초하에서 Four One Operation활성화방안, 수입증가 및 지출감소 방안을 각팀별로 제안하도록하여 경영개선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사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 장 : 다음은 제5페이지 상정번호 제2018-02호 청주의료원 진료비 장기미수금 결손처분 심의·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부장 진료비 장기미수금 결손처분 심의·의결(안) 제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호이사 : 소멸시효 3년포함된 의료원의 현재 총미수금액은 얼마정도나 되나요?

○ 관리부장 : 결손처분 내용은 개인미수금으로 2015년 11,620천원 2016년 8,719천원 2017년 4,078천원으로 미수금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 장 : 장기미수금 결손처분은 2014년도부터 생긴 것으로 원무팀 직원들이 미수금감소를 위해 노력하여 미수금이 감소되고 있으며, 타 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미수금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계상의 결손이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조규숙이사 : 기초생활 수급자는 의료원에서 거의 무료로 진료를 받지 않나요?

○ 이상수이사 : 기초생활수급자도 진료비를 내는 분야가 있을겁니다. 비급여 같은부분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진료비 장기미수금 결손처분 심의·의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7페이지 상정번호 제2018-03호 청주의료원 2018년도 임대차 심의·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부장 2018년도 임대차 심의·의결(안) 제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주이사 : 커피숍 임대는 용도변경이나 시청에 영업신고 가능합니까?

○ 관리부장 : 본원에 설치된 커피숍과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 커피숍 설치 가능합니다.

○ 김낙주이사 : 적법한 절차에 의해 영업신고를 해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의사 숙소는 임대료 지원외에 숙소 관리운영비 어떻게 하나요?

○ 관리부장 :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사용자 본인이 관리운영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 김낙주이사 : 의사분들이 원하시면 모두 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나요?

○ 관리부장 : 아닙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만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규숙이사 : 지원된 임대료는 나중에 반환하는 거죠?

○ 관리부장 : 네. 그렇습니다.

○ 정규호이사 : 의사3명에 150백만원 예산을 책정하신 건 의사숙소 전세금 지원을 경쟁을 붙여서 여러명 중 3명만 지원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3명만 전세금지원을 원해서 지원 해주는 건가요?

○ 관리부장 : 의사인력 수급계획에 의해 올해 신규채용예정인 응급의학과장, 호흡기내과장, 정형외과장 3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것입니다.

○ 정규호이사 : 만약에 3명 이외에 더 많은 사람이 전세금지원을 원하면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나요?

○ 관리부장 : 네. 그렇습니다.

○ 정규호이사 : 장례식장 커피숍은 직영과 임대와 방법이 있는데 직영하는 것을 고려해보셨나요?

○ 관리부장 : 현재 본원 커피숍도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영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규호이사 : 인건비 부담으로 임대를 주는 것도 좋지만 직영을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증대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철수이사 : 장례식장 안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운영하는데에 허가기준을 잘 확인해서 적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수이사 : 현재 전세지원금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관리부장 : 현재 18명 85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규호이사 : 커피숍임대를 주는 경우 가격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로 장례식장 이미지가 하락되는 현상까지 고려하여 분석해주시기 바라며, 수익적인 측면과 장례식장 운영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장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8년도 임대차 심의·의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9페이지 상정번호 제2018-04호 및 제13페이지 상정번호 제2018-5호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부장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제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주이사 : 의료수익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소방기사 1인 증원시 최소 연간 3천만원 이상 인건비가 증가합니다. 정확한 수익분석 없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정규호이사 : 시설관리팀 인력충원시 소방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채용해서 타업무와 소방관련업무를 같이 수행하게 해야지 소방담당 기사만 채용하는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도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낙주이사 : 정원을 증가시키지 말고 소방기사 직종만 추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의 장 : 현재도 행정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2명 부족한 상태로 인건비 문제로 채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방기사 TO는 확보하되 채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이상수이사 : 예를들어 열관리사가 소방기사 자격증을 보유해서 겸직을 한다면 좋겠지만 제천이나 밀양사고를 보면 수지타산여부를 떠나서 소방기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낙주이사 : 현 상황에서 정원을 한명 늘리는 것은 인건비 비율이 68%로 높은 상황에서 부적절합니다.

○ 의 장 : 현재 행정직 현원이 2명 부족한테 그 부족인원을 소방기사로 뽑아도 됩니까?

○ 관리부장 : 정원은 늘리지 않는 상태로 관리직내에서 행정TO를 1명 줄이고 소방기사를 신설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의 장 : 그러면 정원은 늘리지 않고 행정TO를 1명 줄이고 소방기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겠습니까?

- 의 장 : 그럼 정원은 늘리지 않고 행정TO를 1명 줄이고 소방기사 한명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16페이지 상정번호 제2018-06호 청주의료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부장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제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주이사 : 국제진료 일통역비를 15만원 책정해서 그 50%(75천원)를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제진료 관련한 수익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제진료도우미 관련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 의 장 : 현재 근무중인 국제진료도우미의 역량이 대단합니다. 2017년도 유치환자수는 13백명이고 실적은 89백만원입니다. 2018년1월에도 134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정말 청주의료원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 김낙주이사 : 1년에 천이백명이 넘는 외국인을 국내에서 유치하는건가요?

- 의 장 : 네. 해외 에이전트와는 별개로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들과 SNS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유치하는 환자수입니다.

- 김낙주이사 : 국제진료 에이전트가 해야할 일을 의료원 국제진료도우미가 대신해서 서비스가 더 좋다는 얘기를 들어습니다. 수치분석을 통해 수치타산이 맞다면 국제진료도우미 관련해서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순걸이사 : 해외연수의사프로그램 진행시 현 국제진료도우미의 통역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현재의 급여로는 국제진료도우미를

대체할 만한 인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국제진료도우미의 역할이 상당하므로 원장님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최저 시급보다는 조금 더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해주시는 것이 고용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 장 : 국제진료도우미는 인건비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만 지급했으나, 외국인 환자진료 및 병원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 김낙주이사 : 앞으로 중국통역이나 다른나라 통역은 필요 없습니까?

- 의 장 : 청주의료원에서 외국인 환자유치는 다른 나라는 경쟁력이 없어서 러시아만 한다고 일전에도 도 담당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정규호이사 : 열심히 일한사람에게 더주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한쪽에 치우침 없이 누가보더라도 공정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20페이지 상정번호 제2018-07호 청주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부장 청주의료원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제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장 : 본건은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청주의료원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28페이지 상정번호 제2018-08호 청주의료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부장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호이사 :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회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안전을 제안하지 말고 차후로는 협의사항으로 임의적인 상태로 안전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주이사 : 가족수당 인상시 58백만원 비용이 발생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수입은 어느 부문에서 충당하실 계획이신가요?
- 의 장 : 전년도에 비해 의료수익은 늘고 의료손실은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원의 병실가동율이 95%가 넘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문 특정을 해서 비용을 충당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이상수이사 : 현재 공무원은 이대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거죠?
- 의 장 : 네. 그렇습니다. 지방의료원도 이렇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가 많습니다. 경기도의료원도 2017년1월부터 소급적용을 하였고 가까운 충주의료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수이사 :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상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낙주이사 :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인상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비용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입 부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 김동구이사 : 국가시책인데 도에서 지원을 좀더 해주세요

- 정규호이사 : 의료원의 보수는 공무원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따르게 되어 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국가정책으로 가족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이니 그 비용 발생으로 다소 운영이 어렵더라도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본건은 통과시켜 주심이 좋겠습니다.

- 의 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31페이지 상정번호 제2018-09호 청주의료원 실적수당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부장 실적수당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제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장 : 조문에 목표금액을 설정해 놓음으로 목표금액 초과시 규정 개정을 통해 목표금액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잦은 규정 개정을 하고 있어서 규정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 의 장 : 규정을 현실화 시키자는 내용이니 실적수당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33페이지 상정번호 제2018-10호 청주의료원 환자급식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환자급식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리부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부장 환자급식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정규호이사 : 제16조에 급식확인에 있어 간호사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 관리부장 : 아닙니다. 간호관리기록지에 취식상황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어 환자급식관리규정에서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 정규호이사 : 환자의 취식상황을 영양사가 다 확인할 수 없는데 현 규정대로 간호사와 영양사가 취식상황을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 간호부장 : 환자급식관리규정에서 간호사의 취식상황 확인 조항을 삭제해도 간호사가 환자의 취식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정규호이사 : 제10조 식사처방은 간호사가 하는거죠?
- 간호부장 : 아닙니다, 식사처방도 오더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하고 입력합니다.
- 이상수이사 : 영양사가 규정개정을 요구했다고 해준다는건 이치에 맞지않고 환자의 취식상황은 간호사가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낙주이사 : 다른병원 민원사례를 보면 환자식이 바뀐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양사가 모든 환자의 취식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니 간호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 이상수이사 : 환자급식관리규정과 중복되게 간호관리규정에 환자취식 상황 확인여부가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주이사 : 개정을 하게되면 환자의 취식상황 확인은 규정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 간호부장 : 간호관리규정에는 없지만 간호업무지침에 있습니다.
- 이상수이사 : 간호업무지침에 취식상황 확인이 있다해도 규정에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규정은 함부로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재무회계팀장 : 제10조 3항은 개정안 대로 수정을 하고 제16조는 현행으로 유지를 해도 각종 평가기준이나 인증에 문제가 없으니 제16조는 현행으로 유지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의 장 : 그럼 제10조 3항은 개정안 대로 수정을 하고 제16조는 현행으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이사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의 장 : 그럼 환자급식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은 일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35페이지 상정번호 제2018-11호 청주의료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리부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관리부장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에 근거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장시간 불편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심의 의결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명확함을 기하기 위하여 김낙주이사님과 이상수이사님께서 회의록에 확인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차 정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